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3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4.

발 의 자: 구자근・김희국・조수진

서병수・곽상도・김태흠

장제원 • 전봉민 • 추경호

홍석준 · 김용판 · 김도읍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정부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열처리,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사출·프레스, 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링설계, 산업지능형 SW, 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「뿌리 4.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」을 발표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,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·지원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

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또한 뿌리산업 인력 양성 및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뿌리기술의 정의에 사출·프레스, 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 링 설계, 산업지능형 SW, 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류를 추가함(안 제2조).
- 나.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.
- 다. 뿌리기술로 지정된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열처리, 표면처리, 사출·프레스, 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링 설계, 산업지능형 SW, 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1항).
- 라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 열처리(熱處理) 등"을 "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 열처리(熱處理), 사출・프레스, 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링 설계, 산업지능형 SW, 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"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중 "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"을 "주조, 금형, 소성가 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, 사출·프레스, 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링 설계, 산업지능형 SW, 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의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"로 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<u>.</u>
1. "뿌리기술"이란 <u>주조(鑄造)</u> ,	1
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	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
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	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
處理), 열처리(熱處理) 등 제조	열처리(熱處理), 사출・프레스,
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	3D 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
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	어링 설계, 산업지능형 SW,
는 기술을 말한다.	로봇, 센서, 산업용 필름 및 지
	류 등
	11 6
제9조(뿌리산업 인력의 확보) ①	제9조(뿌리산업 인력의 확보) ①
(생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	②
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	
진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
	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
	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
	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지원할 수 있다.

제.	14조	(핵심	뿌리	기술의	의 ス	기정	및
	연구	개발	지원)	1	산업	통성	상자
	원부	장관은	- 뿌ㄹ	기술	음의	개별	날과
	확산	을 촉	진하기	위하	하여	<u>국</u> 기	<u> </u>
_	으로	중요	.한 뿌	쁘리기	<u>술</u> 을	- ğ	백심
	뿌리	기술로	. 지정	하고	0)0	भी ट	배한
	연구	개발,	기술지]원 및	및 연	구성	성과
	확산	등을	지원형	할 수	있다	₹.	

제21조(특화단지의 지원) ① 산업 제21조(특화단지의 지원) ① ----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4	14조	:(핵	심	뿌리	기술	의	지경	성	밎
	연구	개별	날 기	지원)	1-				
						- — = = -	주조,		금
	형,	소	성가	-공,	용집	∄,	표면	처	리,
	<u>열처</u>	리,	사	출•	프레	스,	3D	$\overline{\Sigma}$	린
	팅,	정밑	길가	공,	엔지	니아	l 링	설	계 <u>,</u>
	<u>산업</u>	지능	등 형	SV	V, 로	.봊,	센스	₹,	<u>산</u>
	업용	- 필	름	및	지류	등	의 분	나	:에
	서	국가	적의	으로	중요	- 한	뿌리] 7]	<u>술</u>
		•							
-11	017	/ F	ት) ተ	1 -1 6	√l →l	φ1.)	1		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② (현행과 같음)